대관 규정 시행세칙

제 정 2023. 03. 28. 세칙 제 6호
개 정 2023. 07. 29. 세칙 제 7호
개 정 2023. 08. 28. 세칙 제 9호
개 정 2023. 09. 08. 세칙 제11호
개 정 2023. 12. 29. 세칙 제12호
개 정 2024. 07. 09. 세칙 제14호
개 정 2025. 01. 16. 세칙 제16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재단법인 부천아트센터(이하 “재단” 이라 한다)의 대관규정 제21조에 따라 재단의 대관시설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대관 절차

제2조 (대관의 종류) 대관은 목적에 따라 공연(전시)대관, 준비대관, 철수대관, 기타대관으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전시)대관 : 공연(전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단의 시설을 대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준비대관 : 공연대관 이전에 무대세트 및 장비 설치, 리허설 등 공연의 준비를 위하여 대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철수대관 : 최종회차 공연을 종료한 이후 무대 세트, 조명, 음향, 촬영 장비 등의 철수를 위하여 대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4. 기타대관 : 공연(전시) 목적 이외에 방송, 영화, 녹화, 녹음, CF 등을 위

하여 대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 (대관절차) 대관 절차는 아래와 같다. <개정 2025. 01. 16.>

대관신청 → 대관심의 → 결과통보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입장권 등록 → 잔금 납부 → 입장권 판매 → 공연 준비 및 진행 → 추가사용분 등 사용료 정산

제4조 (대관신청) ① 신청인은 재단 홈페이지(www.bac.or.kr)에서 대관 공지 및 접수 일정을 확인하고, 대관 홈페이지(partner.bac.or.kr)를 통해 접수한다.

② 신청인은 대관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관신청서 및 공연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1. 공연자 또는 전시자(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공연 또는 전시의 명칭・종류 및 내용
3. 대관・대여기간
4. 공연 또는 전시의 횟수 및 일시
5. 출연 예정인원 또는 전시 진행인원
6. 공연자의 공연 경력 또는 전시자의 전시 경력

③ 신청인은 심의 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신청서 등을 성의껏 작성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 시 대관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5조 (예술자문위원회) ① 예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내・외부 11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재단 대표이사가 지명한다. <개정 2023. 07. 29.>

②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수시대관 또는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자체심의 및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⑥ 대관 심의 방법은 신청 건별 승인 가부제로 하며, 심의 기준은 제6조, 제7조에 따라 재단이 정한다.
⑦ 대관 심의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대관승인기준) 재단은 신청인의 공연(전시)내용, 단체수준, 과거 대관 사용실태, 차기연도 공연장(갤러리) 운영계획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개정 2024. 07. 09.>
1.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전시 등
2. 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문화예술관련 공연・전시・행사 등
3. 국가 또는 부천시 주최의 비영리 목적의 공연 및 행사・전시
4. 문화예술의 발전 등을 위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전시
5. 콘서트홀의 경우 특정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고객을 초청하는 형식의 행사 또는 컨퍼런스 형태의 특정 단체 내부 행사 등은 승인하지 않는다.

제7조 (대관신청의 경합) 대관 신청 기간이 경합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자문위원회의 의결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1. 작품 출연진 및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성을 갖춘 예술성 높은 공연・전시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공연예술 활동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순수 예술 활동
4. 단체와 개인이 경합 된 경우 단체를 우선으로 하며, 공연 실적 및 객관적으로 우수한 수준의 공연 등의 순으로 평가한다.
5. 기타의 경우에는 재단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대관승인 및 계약) ① 재단은 대관신청 접수 마감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유선 또는 서면(이메일, 대관 홈페이

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 통보 시 고지된 일자까지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용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천아트센터 대관 계약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부천아트센터 전시대관 계약서’에 따른다.
③ 대관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금(기본 사용료의 20%)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단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30일 전 또는 입장권 판매 개시일 중 빠른 날짜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대관의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공연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 체결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대관승인 이후에도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해당 공연과 관련한 자료의 추가적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대관변경 및 취소) ①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연・전시내용(공연・전시명, 공연・전시내용, 출연자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용자는 변경사항을 재단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의 내용변경은 승인되지 아니한다.
② 대관 변경으로 인하여 재단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위약금은 제13조에 따른다.

제3장 사 용 료

제10조 (사용시간) ① 재단의 시설에 대한 사용시간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다.
1. 오전 : 09:00~12:00
2. 오후 : 13:00~17:00
3. 야간 : 18:00~22:00

② 상기 사용시간 외 시설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피하게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재단과 협의 후 사용이 가능하다.
③ 철수 작업에 한하여 사전 협의를 통해 1시간 단위의 추가 사용이 가능하다.
④ 대관 신청 시 연속된 일자로 대관하여야 하며, 분리된 일자로 대관할 경우 대관 일자 점유에 따른 공연・녹음(음반)・촬영(방송,영화 등) 기본대관 대관료의 50%를 추가 징수한다. 단, 대관 규정 제3조 3항에 따른 재단의 휴관일은 점유일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5. 01. 16.>

제11조 (사용료 등) ① 사용료는 매년 공연장 및 갤러리 유지관리비용,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산정하며, 이 세칙이 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와 부대설비 사용료로 구분하며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사용료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재단이 정한 별도 기준에 따른다.
④ 잔금 납부 이후에 발생한 기본 사용료는 부대설비 사용료에 포함하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관 당일 발생한 부대설비 사용료 등 추가 사용료는 대관 종료 후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01. 16.>
⑤ 재단과 공동 기획하는 공연의 경우 사용료 산정 및 납부 방식은 별도 상호 협의에 따른다.
⑥ 재단은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연의 재단 내 입장권 판매 수입을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의 특례) ① 재단은 대관규정 제13조에 따라 대관료 및 부대설비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실비개념의 인건비 등은 단체가 부담한다.
② 대관규정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부천아트센터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 신청을 받은 재단은 14일 이내에 감면 여부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료의 반환)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한 대관 취소 시 반환금은 다음과 같다.

취소시점 (대관 시작일 기준 남은 기간)	반환금
대관 시작일로부터 60일 이상	전액 반환
대관 시작일로부터 30일 이상 60일 미만	대관료의 20%(계약금) 외 반환
대관 시작일로부터 30일 미만	미반환

제4장 입 장 권

제14조 (좌석등급 및 유보석) ① 공연장 좌석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25. 01. 16.>

구분	콘서트홀	소공연장
좌석 등급	R, S, A, B, C	R, S, A
유보석	1층 B구역 4열 1, 2번 1층 B구역 11열 17~20번 1층 E구역 2열 18, 19번 2층 B구역 2열 1, 2번 2층 B구역 4열 17~20번 **총 14석**	E열 6, 7, 8, 9번 **총 4석**
휠체어석	16석	4석

② 콘서트홀은 최대 5개, 소공연장은 최대 3개의 등급으로 좌석을 나눌 수 있으며 위에 명시하지 않은 좌석 등급을 사용할 경우 재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하여 콘서트홀 14석, 소공연장 4석의 유보석을 사용한다. 사용자는 입장권 판매 및 발행 시 유보석을 제외하여야 하며 공연 사정에 따라 유보석은 상호 협의할 수 있다.

③ 휠체어석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관객이 휠체어에 탑승한 채로 관람하거

나 휠체어에서 좌석으로 옮겨 앉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탈부착이 가능한 좌석을 말한다.

제15조 (입장권의 등록 및 발행) ① 사용자는 재단이 운영하는 대관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권 발권을 의뢰한다. 입장권 발권은 전산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재단에서의 발행을 기본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원활한 입장권 판매를 위해 입장권 판매 시작 희망일을 기준으로 14영업일 이전까지 대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연 등록 신청 및 공연 정보 등 재단에서 요청하는 관련 자료를 서식에 맞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07. 29.>
③ 입장권의 등록은 사용자가 기본 대관료의 계약금을 완납한 이후에 가능하며, 입장권의 판매 개시는 기본 대관료의 잔금을 완납한 이후에 가능하다. 사용자가 본 항을 위반하여 판매대행사나 기타 유통업체를 통하여 입장권을 판매할 경우, 재단은 판매 금지, 사용자의 권한 제한, 입장권의 회수, 해당 입장권 소지자의 입장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재단 및 판매대행사에게 공연일과 좌석 등급에 대하여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며 세부 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재단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용자는 입장권을 임의로 발행하거나 그 수량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재단은 승인하지 않은 입장권 소지자의 입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과 배상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16조 (입장권의 운영) ① 사용자는 입장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재단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공연 중단 및 취소, 출연자 문제, 입장권 중복발행 등)로 인한 관객 민원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책임지고 손해배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민원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재단은 이를 우선 해결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사용자가 즉시 재단에 지급하거나 입장권 판매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초대교환권은 재단의 사전 승인 후 재단 매표시스템으로만 발권 가능하며 수량은 교환해 줄 지정석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초대교환권은 공연 당일에만 지정석으로 교환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 수령이 필요할 경우 재단의 티켓매니저와 사전 협의한다.
⑤ 원활한 공연장 운영과 지류티켓 축소를 위해 재단의 사용자는 모바일 티켓 및 검표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7조 (입장권의 판매대행) ① 사용자는 재단 및 재단과 연동계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사를 선택하여 입장권을 판매할 수 있으며 비연동 판매처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재단 시스템을 이용한 입장권 운영에 있어서 재단에 수수료를 지불 하여야 하며 관련된 운영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01. 16.>
③ 사용자는 판매대행사와 계약을 체결 후 그 사실을 재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15조 제3항에 따라 재단의 승인 전에는 입장권을 위탁 판매할 수 없다.
④ 재단은 입장권 판매 과정에서 사용자가 대관규정 또는 세칙을 위반하거나 귀책사유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재단과 판매대행사의 입장권 판매를 보류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재단과 판매대행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는 재단 및 입장권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사에게 고유의 할인 권종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판매기간 제어(예: 조기예매) 및 일반적인 할인권종(예: 청소년 할인)을 부여함에 있어 재단을 제외하고 특정 판매대행사에게만 차별적으로 부여할 수 없다. 사용자는 고유의 할인 권종 이외의 입장권은 동일한 가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본 항은 판매대행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⑥ 사용자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www.kopis.or.kr)에 온라인 예매 및 전산발권 처리된 입장권 예매정보(공연명, 일시, 티켓판매금, 예매자 정보 등)를 제공하는데 동의하며, 제공된 정보는 종합된 통계로 공개된다.

제18조 (입장권 판매금의 정산) ① 재단은 공연이 최종 완료된 후에 입장권 판매금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재단은 공연 종료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해당 공연의 최종 입장권 판매금 정산서를 송부하며, 사용자로부터 정산 내역 확인 서류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정산된 판매금을 지급한다. 다만, 사용료 미납액이 있을 경우 재단은 정산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송부받은 정산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재단은 그 이의가 해소될 때까지 판매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에 따른 행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재단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있을 경우 재단은 입장권 판매금에서 그 채무를 상계한 후 잔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재단에 대한 사용자의 채무가 입장권 판매금보다 많을 경우 재단은 입장권 판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재단은 판매대행사가 사용자에게 미지급한 입장권 판매금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재단은 사용자의 사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권 판매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1. 공연 중단 및 취소, 조기 종료, 부실 공연, 공연 시간 및 내용 변경 등 공연 정보의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2. 입장권 가격의 변경으로 인한 예매자 환불 및 변경사항 등의 정리가 미흡한 경우
3. 입장권 판매 도중 대관이 취소된 경우

제19조 (홍보 및 저작권) ① 사용자는 공연에 필요한 홍보물 및 각종 광고 제작 시 재단이 규정하는 로고 및 BI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공연에 대한 저작권 및 수익권이 사용자에게 귀속되었거나 저작권자와 정식 계약 하에 합법적으로 수용, 수익권이 취득되었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공연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만일 제3자가 재단을 상대로 청구를 하거나 이의 또는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재단은 면책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재단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비용 지출의 손해를 입을 경우 사용자는 재단이 입은 손해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5장 공연 운영 등

제20조 (공연준비) ① 사용자는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하여 최소 공연 2주 전까지 재단이 주최하는 스태프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스태프 회의 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대관사용일 3일 전까지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7. 09.>
② 사용자는 재단 직원의 공연진행에 관한 협조사항에 응하여야 한다.
③ 사회자 및 해설자가 공연을 진행하는 경우 공연당일 무대에서 사용할 원고, 영상을 공연 1주일 전까지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신설 2024. 07. 09.>

제21조 (녹화 중계 및 촬영) ① 재단의 시설에서 공연 및 리허설을 녹화(또는 방송)하는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촬영 위치, 시설사항 등에 관하여 재단의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재단 내 촬영 및 중계로 인하여 관람에 방해가 되는 좌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좌석의 판매를 유보하거나 대체할 좌석을 확보하여야 하며, 관객 민원 발생 시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공연장 내 외부 카메라를 반입하여 별도의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촬영은 지정 촬영 위치 및 카메라 대수를 준수하여야 하며,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음기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22조 (공연 진행) ① 공연진행이란 공연 준비에서부터 철수까지 이루어지는 공연과 관련한 진행 제반사항을 말한다.

②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해 사용자는 재단 무대감독과 하우스매니저의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하며, 공연진행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화재, 무대붕괴, 기타 공연 출연자, 부대시설 등에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재단 무대감독 또는 하우스매니저는 공연 시작을 지연하거나 공연을 중지할 수 있다.
③ 리허설 및 공연 중 무대전환은 사용자 측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07. 09.>
④ 대관시설(객석 및 로비 등) 내 화환 반입은 금지한다.
⑤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하여 사용자는 공연당일 프로그램 10부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객석 운영) ① 공연시작 1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 시까지 하우스 운영(객석 및 로비, 안전관리, 관람객 편의 등)은 하우스매니저가 총괄한다.
② 사용자는 공연진행을 위한 로비 및 객석 내에서의 모든 활동에 관하여 하우스매니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관객 및 사용자(스태프)의 중간입장은 하우스매니저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공연진행 및 타 관객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경우 하우스매니저는 중간입장을 통제하거나 임의로 조정 및 결정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공연당일 민원 발생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원활한 공연장 운영을 위하여 하우스매니저의 입장권 환불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원활한 현장 운영과 민원 해결을 위하여 공연 종료 시까지 담당자 1인을 지정하여 상주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원활한 공연장 운영을 위하여 공연 당일 미취학 아동 및 기타 부득이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입장권을 환불 조치할 수 있으며, 환불 조건은 재단 환불 규정을 따른다.

제24조 (로비 부대행사) ① 사인회는 공연 종료 후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사인회에 필요한 집기(책상, 의자 및 차단봉)는 재단에서 제공하며 설치는 사용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사인회 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책

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② 사인회와 포토존을 제외한 주최사 및 협찬·후원사 판촉홍보부스 설치 및 시설물 사용 등이 필요한 경우 재단과 사전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로비 부대행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재단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하며, 진행 시 하우스매니저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1. 리셉션
2. 고객만족도 조사 등 설문조사
3. 음료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4. 기타 공연의 진행과 무관한 별도의 행사
④ 로비 부대행사에 관련된 모든 설치물은 공연 당일 철수하여야 하며 발생하는 산업 폐기물은 사용자가 회수한다.

제25조 (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 이 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세칙의 해석에 관하여는 재단의 관련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대표이사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한 사무는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3. 07. 29. 세칙 제 7호>**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대표이사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08. 28. 세칙 제 9호>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대표이사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09. 08. 세칙 제11호>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대표이사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29. 세칙 제12호>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07. 09. 세칙 제14호>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대표이사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01. 16. 세칙 제16호>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대표이사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부천아트센터 시설 사용료

<개정 2023. 07. 29., 2023. 09. 08., 2024. 07. 09., 2025. 01. 16.>

1. 콘서트홀

가. 콘서트홀 사용료

(단위: 원/부가세 별도)

구분		기본대관		추가대관 (시간당)
공연대관	마티네	1회/4시간	2,040,000	불가
	일반	1회/6시간	4,080,000	680,000
연습·준비·철수 대관	주간	09:00~17:00	3,300,000	480,000
녹음 (음반)		3시간	1,380,000	460,000
촬영 (방송, 영화 등)	전체	3시간	4,080,000	1,360,000
	공연장 로비	3시간	2,040,000	680,000

나. 콘서트홀 운영시간

구분	공연시간	운영구분	운영시간	비고
마티네	11:00	셋업 및 리허설	08:00 ~ 10:00	
		점검 및 오픈	10:00 ~ 11:00	무대사용 불가
		공연 및 철수	11:00 ~ 13:00	런닝타임 90분 이상 협의 분장실 포함 퇴실
일반 (주중)	19:30	셋업 및 리허설	14:30 ~ 17:30	
		석식	17:30 ~ 18:30	무대사용 불가
		점검 및 오픈	18:30 ~ 19:30	무대사용 불가
		공연 및 철수	19:30 ~ 22:30	분장실 포함 퇴실
일반 (주말-토, 일, 공휴일 1회)	17:00	셋업 및 리허설	12:00 ~ 15:00	
		석식	15:00 ~ 16:00	무대사용 불가
		점검 및 오픈	16:00 ~ 17:00	무대사용 불가
		공연 및 철수	17:00 ~ 20:00	분장실 포함 퇴실
일반 (주말-토, 일, 공휴일 2회)	14:00, 18:00	셋업 및 리허설	09:00 ~ 12:00	
		중식	12:00 ~ 13:00	무대사용 불가
		점검 및 오픈	13:00 ~ 14:00	무대사용 불가
		공연	14:00 ~ 16:00	런닝타임 120분 이상 협의
		정리 및 휴식	16:00 ~ 17:00	무대사용 불가
		점검 및 오픈	17:00 ~ 18:00	무대사용 불가
		공연 및 철수	18:00 ~ 21:00	분장실 포함 퇴실

※ 재단 및 대관사의 사정에 의해 운영시간 변경을 원할 시 재단과 협의 필수

① 기본 사용료 포함 사항 : 무대 및 객석, 분장실, 프로덕션룸, 그린룸, 냉·난방
- 리허설 및 공연진행 시 안전관리와 무대기술 지원을 위한 무대감독 1명, 조명감독 1명, 음향감독 1명 배치를 기본으로 함.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경우 부천아트센터와 사전 협의 후 대관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음
- 하우스매니저 1명 및 공연장 안내원 ※ 단, 공연 외 행사의 경우 별도 협의 필요

② 콘서트홀의 사용료는 공연 횟수(발권한 입장권의 가격 및 판매유무와 상관없이 공연 입장권을 발권하는 회차 전체)에 따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 기준 시간을 초과할 경우 추가 대관료를 부과한다.

③ 콘서트홀의 연습·준비·철수대관은 구간별 기본 시간 전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공연일을 제외한 날에 적용이 가능함

④ 제10조 제2항에 다른 심야시간 추가대관 요금은 상기 추가 대관 사용료의 200%를 적용함

⑤ 오르간 메모리 작업에 따른 공연장 사용료는 콘서트홀의 연습·준비·철수 대관의 추가대관(시간당) 대관료를 부과하며, 사용 시간은 최대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소공연장

가. 소공연장 사용료

(단위: 원/부가세 별도)

<table>
<tr><th colspan="3">구분</th><th colspan="3">기본대관</th><th>추가대관 (시간당)</th></tr>
<tr><td colspan="2" rowspan="3">공연대관</td><td>순수예술</td><td colspan="2">1회</td><td>600,000</td><td>200,000</td></tr>
<tr><td>대중예술</td><td colspan="2">1회</td><td>900,000</td><td>300,000</td></tr>
<tr><td>행사</td><td colspan="2">1회</td><td>1,200,000</td><td>400,000</td></tr>
<tr><td colspan="2" rowspan="12">연습·준비·철수 대관</td><td rowspan="3">순수예술</td><td>오전</td><td>09:00~12:00</td><td>150,000</td><td rowspan="12">분리하여
사용불가</td></tr>
<tr><td>오후</td><td>13:00~17:00</td><td>200,000</td></tr>
<tr><td>야간</td><td>18:00~22:00</td><td>300,000</td></tr>
<tr><td rowspan="3">대중예술</td><td>오전</td><td>09:00~12:00</td><td>225,000</td></tr>
<tr><td>오후</td><td>13:00~17:00</td><td>300,000</td></tr>
<tr><td>야간</td><td>18:00~22:00</td><td>450,000</td></tr>
<tr><td rowspan="3">행사</td><td>오전</td><td>09:00~12:00</td><td>300,000</td></tr>
<tr><td>오후</td><td>13:00~17:00</td><td>400,000</td></tr>
<tr><td>야간</td><td>18:00~22:00</td><td>600,000</td></tr>
<tr><td colspan="3">녹음 (음반)</td><td colspan="2">3시간</td><td>300,000</td><td>100,000</td></tr>
<tr><td rowspan="2">촬영
(방송, 영화 등)</td><td>전체</td><td colspan="2">3시간</td><td>1,200,000</td><td>400,000</td></tr>
<tr><td>공연장 로비</td><td colspan="2">3시간</td><td>600,000</td><td>200,000</td></tr>
</table>

나. 소공연장 운영시간

① 기본 사용료 포함 사항 : 무대 및 객석, 분장실, 프로덕션룸, 그린룸, 냉・난방
- 리허설 및 공연진행 시 안전관리와 무대기술 지원을 위한 무대감독 1명, 조명감독 1명, 음향감독 1명 배치를 기본으로 함.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경우 부천아트센터와 사전 협의 후 대관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소공연장 공연대관의 1회 사용은 공연시작 1시간 전부터 종료 시까지를 의미하며, 공연시간은 인터미션 포함 최대 3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 대관료를 부과한다.

③ 소공연장의 사용료는 공연 횟수(발권한 입장권의 가격 및 판매유무와 상관없이 공연 입장권을 발권하는 회차 전체)에 따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소공연장의 연습・준비・철수대관은 구간별 기본 시간 전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공연 종료 후 30분 이내의 철수 작업은 별도의 철수 대관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⑤ 제10조 제2항에 따른 심야시간 추가대관 요금은 상기 야간 구간 요금의 시간당 사용료 200%를 적용함

⑥ 제10조 제3항에 따른 철수대관은 해당 구간 요금의 시간당 사용료를 적용함

⑦ 철수대관이 완료되는 시점은 철수 대상 장비와 세트가 장치반입구 밖으로 모두 반출되고 공연장이 원상 복구 되는 시간까지를 의미한다.

⑧ 소공연장의 순수예술 장르는 클래식, 국악, 재즈, 무용, 연극, 오페라로 구분하며 대중예술은 순수예술을 제외한 가요, 팝 등의 대중음악 및 뮤지컬로 구분한다.

3. 갤러리

가. 갤러리 사용료

구분		기본대관		추가대관 (시간당)	비고
갤러리	전시	1일	50,000	10,000	냉・난방비 포함

나. 갤러리 운영시간

① 갤러리의 1일 사용시간은 10:00~19:00로 하며, 준비 및 철수대관과 구분하지 않음

② 추가대관은 제10조 제1항의 사용시간 내에서 가능하며 상기 요금을 적용함

③ 사용시간은 분리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기준 시간 미만의 사용이라도 1일 요금을 부과한다.

4. 아츠스튜디오(Arts studio)

가. 아츠스튜디오 사용료

(단위: 원/부가세 별도)

구분	기본대관		추가대관 (시간당)	비고
갤러리, 회의, 강좌	1일	100,000	20,000	냉・난방비 포함
행사, 팝업 스토어, 리셉션, 촬영	1일	200,000	40,000	

나. 아츠스튜디오 운영시간

① 아츠스튜디오의 1일 사용시간은 10:00~19:00로 하며, 준비 및 철수대관과 구분하지 않음

② 추가대관은 제10조 제1항의 사용시간 내에서 가능하며 상기 요금을 적용함

③ 사용시간은 분리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기준 시간 미만의 사용이라도 1일 요금을 부과한다.

④ 28일 이상 대관할 경우에는 29일차부터 1일당 기본대관료의 20%를 할인 적용한다.

5.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 원/부가세 별도)

구분		종류		사용료	기준	비고
악기	건반악기	파이프 오르간	독주	1,000,000	1회	전속 조율사 조율, 조율비 별도
			협연	500,000	1회	
			메모리	100,000	1시간	
		스타인웨이 D-274		130,000	1회	
		가와이 EX-L		110,000	1회	
		하프시코드		110,000	1회	
		첼레스타		110,000	1회	
	현악기	하프		110,000	1회	47 strings 0 octave G to 7th octave C
	타악기	팀파니		100,000	1조/1회	32, 29, 26, 23, 20“
		베이스 드럼		30,000	1회	36“
		세트 드럼		70,000	1세트/1회	Tom(10, 12, 14, 16“)

구분		종류	사용료	기준	비고
		비브라폰	40,000	1회	
		심벌세트(세트드럼)	20,000	1회	Crash(16, 18“), ride(20“), Hi-Hats(14“)
		스네어드럼(세트드럼)	20,000	1회	
		공	30,000	1회	40“
		글로켄슈필	40,000	1회	3.3 옥타브 (C5-E8)
		마림바	50,000	1회	5옥타브(C2 - C7)
		차임벨	40,000	1회	1.6옥타브(C5-G6)
		실로폰	40,000	1회	4.0옥타브(C4 - C8)
		콘서트탐탐	40,000	1개당/1회	6/8, 10/12, 13/14, 15/16“
무대	무대	덧마루	100,000	1일	인력비 대관자 부담
		무대 리프트	150,000	1식/1회	전환 불가
		아크릴 차음판(방음판)	10,000	1개/1회	
		댄스플로어	100,000	1작품	인력 및 테이프 대관자 부담
		이동식 음향반사판	10,000	1개/1일	
조명	조명	무빙 콘솔	200,000	1작품	Grand MA 3, ETC Apex 클래식(기본조명) 운용 시 면제
		Moving Spot Light (MAC Ultra Performance)	60,000	1일	
		Moving Wash Light (MAC Aura PXL)	40,000	1일	
		Follow Spot Light (Ushio XPS-2009SR/e)	30,000	1대/1일	운용인력 대관자 부담
		Fog Machine (Antari F-7 Smaze / Martin Glaciator Dynamic)	20,000	1대/1일	포그액 대관자 부담
		Led Source Four (Lustr X8 26˚36˚)	5,000	1대/1일	
		Led Panel (Arri S60-C)	10,000	1대/1일	
		Led Strip Bar (Ax2 50 Pixelbar)	10,000	1대/1일	
		Led Strip Bar (Ax2 50 Pixelbar)	100,000	1일	콘서트홀 파이프 오르간 (고정)
		Led Strip Bar (GDSK)	100,000	1일	콘서트홀 객석 간접등 (고정)

구분		종류	사용료	기준	비고
음향	녹음	File (2 Track)	50,000	1회	저장매체 신청자 부담
		외부기자재 (음향소스제공)	50,000	1회	
		녹음실	400,000	1회	3시간 기본/장비 제외
	녹화	File	50,000	1회	외장하드 신청자 부담
		외부기자재 (음향/영상소스제공)	50,000	1회	
	외부녹음 /녹화중계	TV 중계	400,000	1회	
		인터넷 중계	300,000	1회	
		라디오 중계	300,000	1회	
	마이크	무선 마이크	30,000	1대/1회	확성 시 기본 확성 비용 별도 부담 건전지(AA) 대관자 부담
		콘덴서 마이크	20,000	1대/1회	
		다이나믹 마이크	5,000	1대/1회	
	모니터 스피커	모니터 스피커	30,000	1대/1회	
	인터컴	무선인터컴	10,000	1세트/1일	
		유선인터컴	5,000	1세트/1일	
	스피커 확성	기본 확성 (콘솔,메인스피커,다이나믹 3대)	200,000	1일	
		멘트 확성 (콘솔,메인스피커,무선마이크 1대)	130,000	1일	2ch 이상 시 기본 확성 적용
	빔프로젝터	Projector (20,000ANSI)	200,000	1회	콘서트홀
		Projector (12,000ANSI)	100,000	1회	소공연장
홍보	DID	내부 DID(16대)	50,000	1일	롤링
		E/V DID(5대)	50,000	1일	롤링
		외부 DID(전광판)	100,000	1일	롤링
			500,000	1주	7일/롤링
하우스	로비	포토존	100,000	1회	
		팬사인회	150,000	1회	대관자 진행
		로비 리셉션	200,000	1회	1회 3시간 기준
		홍보 및 판촉부스	100,000	1회	

- 기자재 사용은 담당자 사전협의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 과실로 인한 파손시 현물배상 해야 함
- 공연목적 외의 장비는 무대에 설치할 수 없음
- 음악회 공연 및 각 장르 공연에 사용되는 피아노 사용 시 정상적인 연주행위(건반 연주)외 사용은 금지
- 피아노의 피치는 442Hz로 고정(피치변경용 피아노 별도 운영)
- 피아노 및 오르간을 사용하는 공연의 경우 공연의 완성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1회 이상을 조율하여야 함
- 장비 및 기자재는 본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상기 내용상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사용요청 시 담당자와 협의 후 사용을 결정할 수 있음
- 사전에 요청되지 않은 부대설비는 사용이 거절될 수 있음
- 콘서트홀과 소공연장 동시에 사용요청이 있을 경우 콘서트홀 사용을 우선시 함
- 생성 2개월이 경과한 녹음, 녹화물의 이상은 아트센터가 책임지지 아니 함

[별표 2]

부천아트센터 입장권 운영 수수료

<개정 2023. 07. 29., 2023. 08. 28., 2023. 09. 08., 2023. 12. 29., 2024. 07. 09., 2025. 01. 16.>

(단위 : 원/부가세 별도)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수수료</th><th>기준</th></tr>
<tr><td rowspan="3">티켓 판매 수수료</td><td>카드</td><td>6%</td><td>판매 금액</td></tr>
<tr><td>가상계좌</td><td>4%</td><td>건별</td></tr>
<tr><td>간편결제</td><td>5%</td><td>건별</td></tr>
<tr><td rowspan="3">티켓 발권 수수료</td><td>초대권</td><td>150원</td><td>1장</td></tr>
<tr><td>초대교환권</td><td>100원</td><td>1장</td></tr>
<tr><td>연동예매처 발권수수료</td><td>150원</td><td>1장</td></tr>
<tr><td>티켓 현장 운영 인력비
※공연회차 및 판매현황에 따라 티켓 매니저와 협의 후 신청</td><td>
<table>
<tr><td colspan="3">필수 신청 인력</td></tr>
<tr><td>구분</td><td>콘서트홀</td><td>소공연장</td></tr>
<tr><td>유료</td><td>2</td><td>1</td></tr>
<tr><td>무료</td><td>1</td><td>1</td></tr>
</table>
</td><td>30,000원</td><td>인력 1인당</td></tr>
<tr><td rowspan="2">홍보 문자 발송비</td><td>SMS</td><td>1건당</td><td>30원</td></tr>
<tr><td>LMS</td><td>1건당</td><td>50원</td></tr>
<tr><td colspan="2">티켓 봉투</td><td>30,000원</td><td>100장</td></tr>
</table>

[별표 3] <개정 2025. 01. 16.>

부천아트센터 무대 안전 수칙 및 시설 안내

❑ 무대 안전수칙

본 무대 안전수칙은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준수해야 할 규정들입니다. 또한 무대에서의 작업(무대・조명・음향시스템의 운영)은 반드시 전문인이 운영하여야 하며, 공연 준비에서 공연 그리고 철수까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대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대 사용

- 무대 사용은 지정된 시간에 한합니다.
- 원활한 리허설 진행을 위해 무대에서는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연장 시스템, 전기 및 무대 장치들을 사용 할 경우 공연장 직원에게 가능 여부를 문의 바랍니다.
- 객석 및 무대에서는 물 이외의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며 지정된 공간 이외에서는 흡연이 불가하오니, 출연자와 스태프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대 출입 시 슬리퍼 착용을 금지하며, 부상 유발 방지를 위해 굽이 높은 신발 착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젖은 우산 등 무대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물품은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출연자의 안전을 위해 악기 케이스는 무대 이외의 장소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공연장 사용기간 중 개인 부주의로 발생 된 안전사고는 모든 책임이 본인 또는 소속 단체에 있으니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대 작업

- 사용 중인 스테이지 리프트의 안전 구역 내로 출입하지 않습니다.
- 상부무대 배튼 작업 시 허용 중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추락 사고에 대비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고소작업 시 작업자는 안전고리가 연결된 필요 장비만을 가지고 작업을 하며 고소 작업대 사용시 주변에 작업관리자가 상주해야 합니다.
- 고소 작업대를 이용한 작업자는 이동 시 주변에 구조물이 있거나 턱이 있는지 확인하고 평면을 유지하여 작업하여야 합니다.
- 바닥으로 배선이 지나가는 작업을 할 경우 출연자, 스태프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하고 절연 가능한 덮개로 덮어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 캣워크나 투광실 작업을 할 경우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공연장 내에서는 작화, 용접, 톱질 등 무대 환경 저해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 무대 시설들이 높게 매달리거나 각종 장치의 설치와 해체 등 위험한 작업들

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작업자의 인명 피해 및 시설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자는 무대 주변 소음에 항상 귀 기울이며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안전 확보에 노력해야 합니다.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

- 소방 시설물 주변에 물건을 적재하실 수 없습니다.
- 소화전 부근이나 피난통로에 장비나 악기를 적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화재 예방을 위해 전열기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 위험물 및 인화물질은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공연장 관계자와 안전성을 확인한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승인된 가연물 및 발화 물질 사용시 최대한 공간을 확보하고 근접거리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 화재 및 비상사태 발생 시 공연장 직원의 유도, 안내방송 또는 안내표지판에 따라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연자 및 공연관련 스태프는 공연 전 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해 사용 공간에 대해 점검해야 합니다.

※ 상기 준수사항의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공연장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분장실 배치도

● 콘서트홀

	위치	크기	분장대	화장실	샤워실	비고
단체 분장실 1	1층	43㎡	6	○	-	
단체 분장실 2	1층	48㎡	8	○	-	
단체 분장실 3	1층	32㎡	6	○	-	
단체 분장실 4	1층	38㎡	6	○	-	
개인 분장실 1	1층	17㎡	1	○	○	ESSEX EUP123
개인 분장실 2	1층	30㎡	1	○	○	ESSEX EGP155
개인 분장실 3	1층	16㎡	1	○	○	
개인 분장실 4	1층	16㎡	1	○	○	
개인 분장실 5	1층	19㎡	3	○	○	
프로덕션	1층	12㎡	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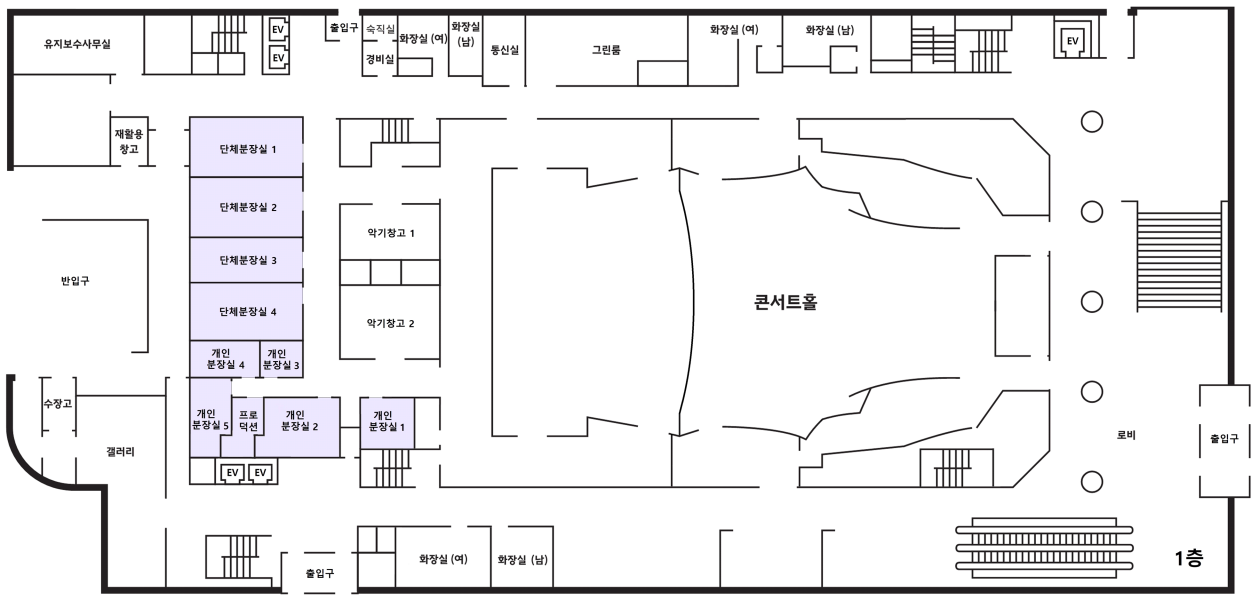

● 2층 소공연장

	위치	크기	분장대	화장실	샤워실	비고
분장실 1	2층	30㎡	3	○	○	
분장실 2	2층	30㎡	3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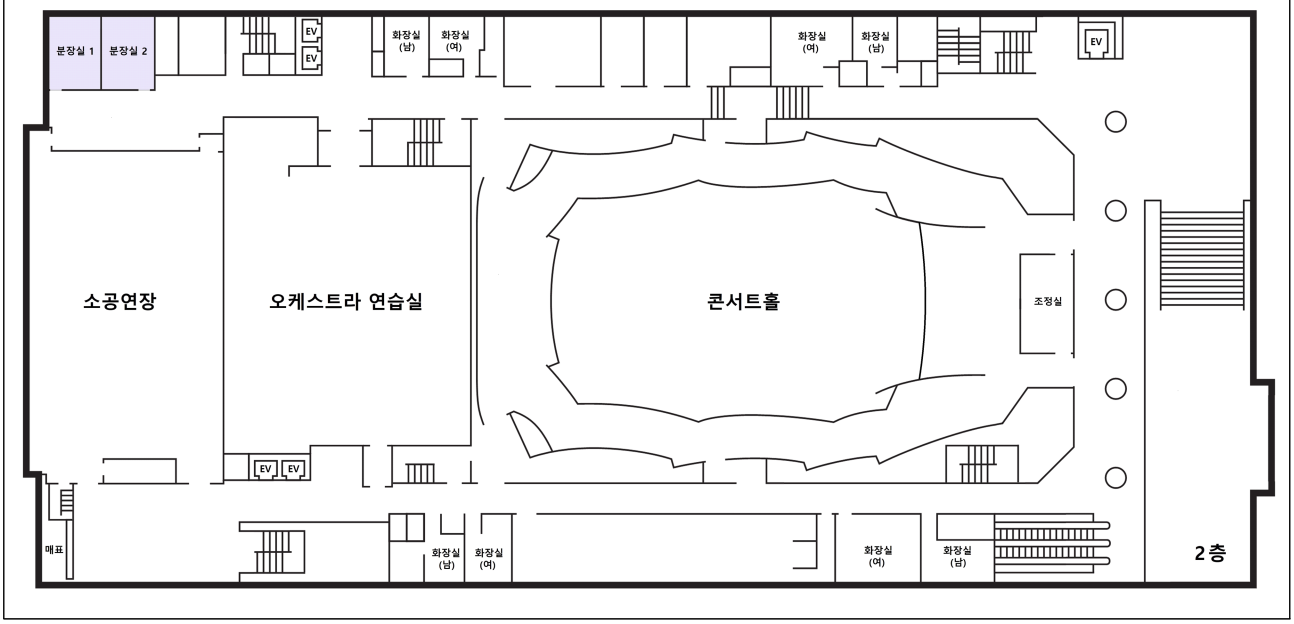

● 3층 소공연장

	위치	크기	분장대	화장실	샤워실	비고
분장실 3	3층	30㎡	4	○	○	
프로덕션	3층	30㎡	0	○	○	피아노(ESSEX EGP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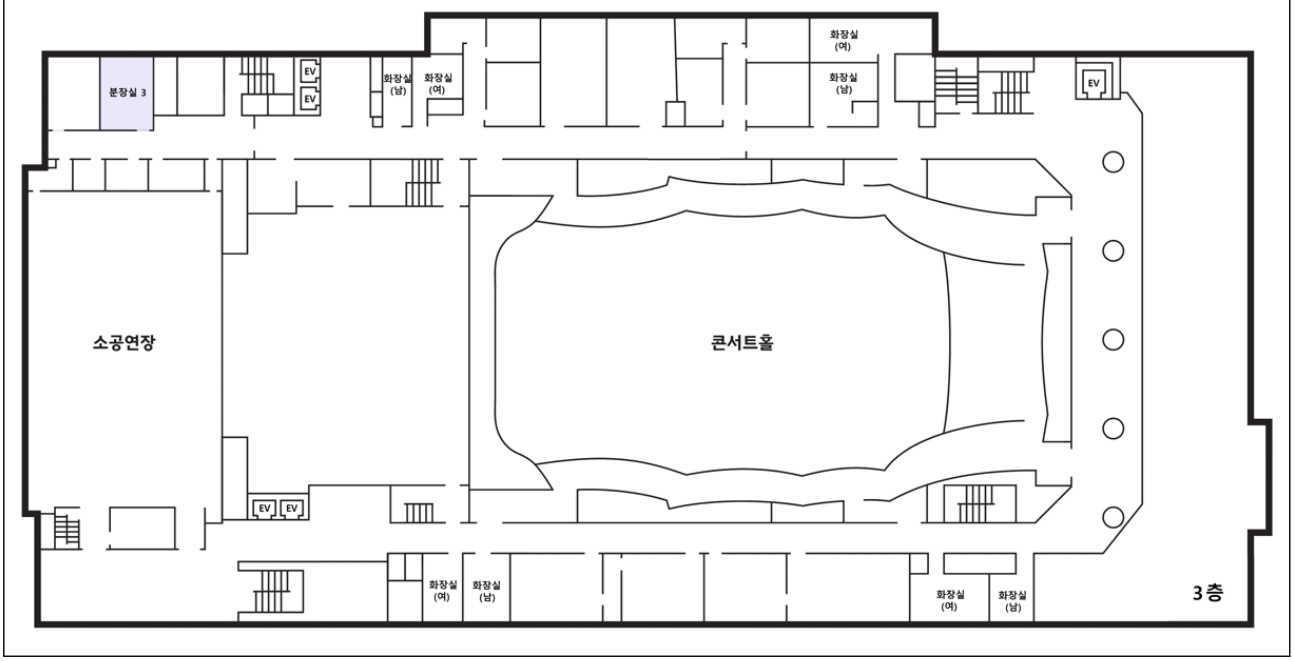

❑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 좌석배치도

총 1,445석		휠체어석 16석	
1층	670석	1층 A구역, C구역	각 2석
2층	444석	1층 D구역, F구역	각 2석
합창석	85석	1층 E구역	6석
3층	230석	2층 A구역, C구역	각 1석

● 객석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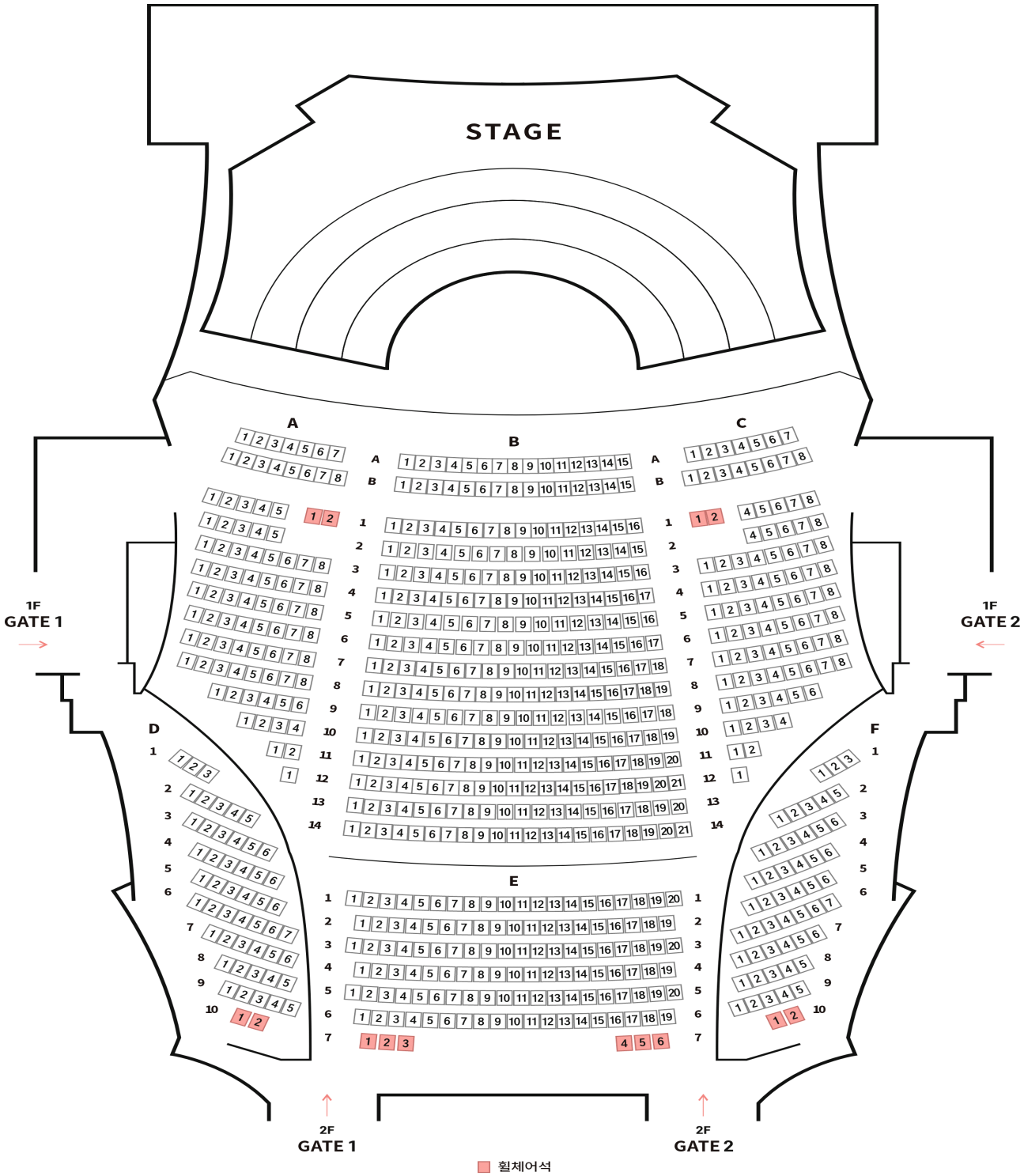

● 객석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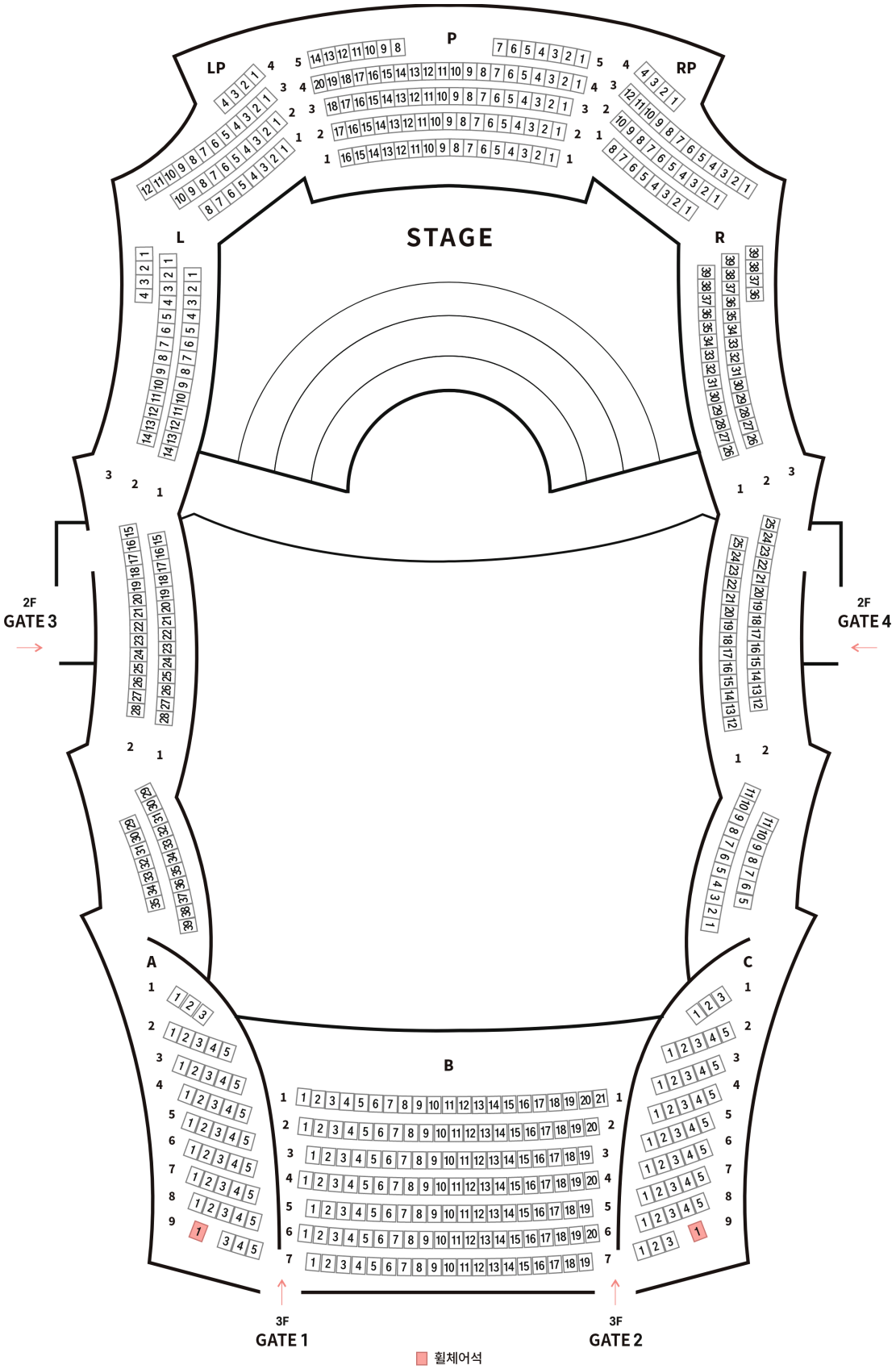

● 객석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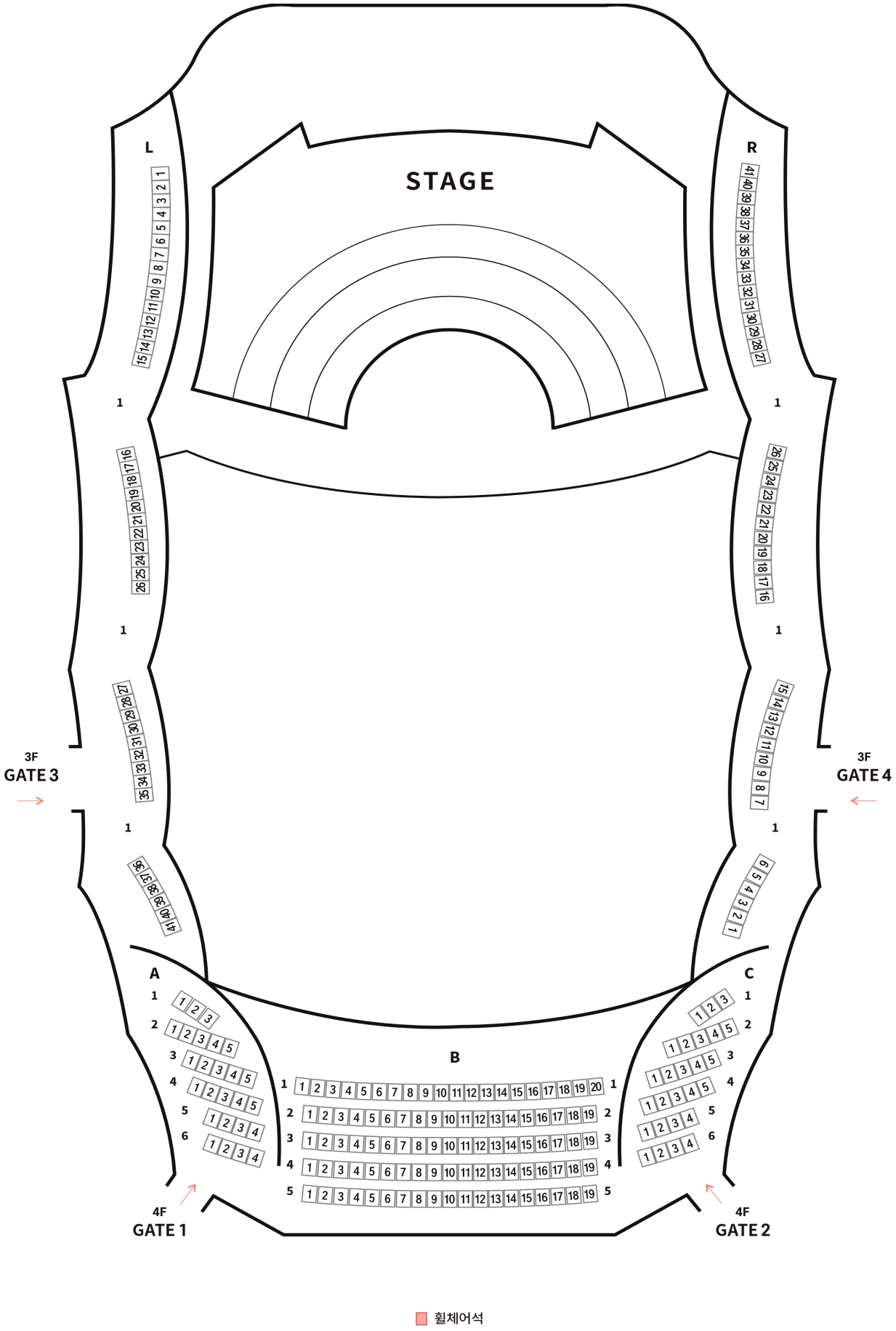

❑ 부천아트센터 소공연장 좌석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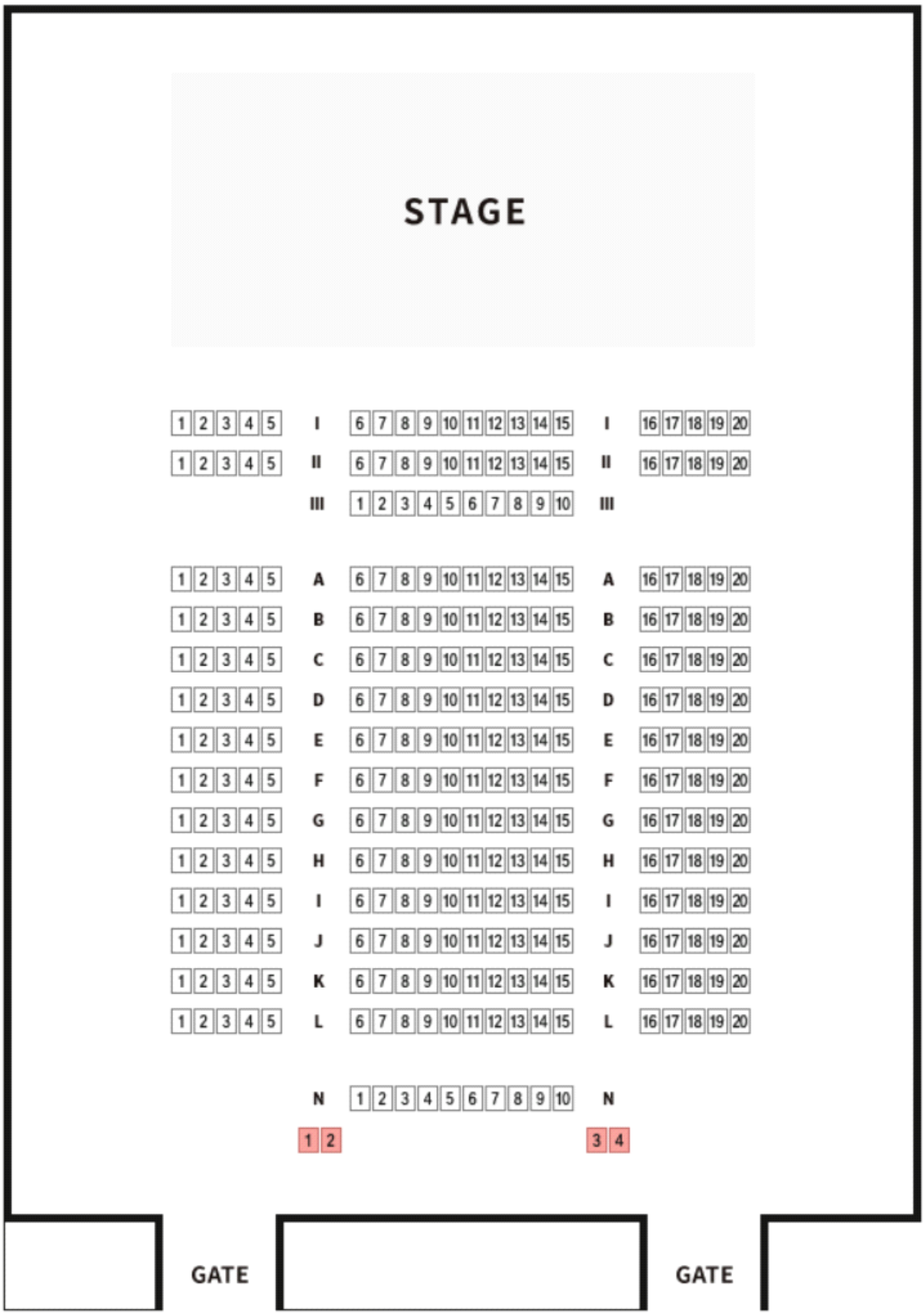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5. 01. 16.>

(재)부천아트센터 공연장 대관계약서

(재)부천아트센터(이하 ‘재단’이라 함)와 OOOO(이하 ‘단체’라 함)는 시설 대관에 관하여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정의)

1. 본 계약에서 ‘대관’이라 함은 공연, 전시, 연습, 행사 등을 위하여 재단의 시설 및 부대설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대관규정’이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부천아트센터 대관규정을 말한다.

제2조 (대관개요)

1. 단체명 :
2. 공연명(장르) :
3. 대관시설 :
4. 대관기간 :
5. 공연시간 :
6. 주최/주관 :

제3조 (대관료산출)

구분	대관 일정		사용료(원)
공연	2023.00.00~2023.00.00 (0일간)	야간 (1회)	
준비 및 철수	2023.00.00~2023.00.00 (0일간)	오후 (1회)	
추가			
감면			
대관료 산출	소 계		
	부가세 10%		
	총 계		

제4조 (대관료의 납부)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원)	청구일	납부기한
계약금			
잔 금			
총 대관료			

1. ‘단체’는 0000년 00월 00일 까지 총 대관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함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자격을 취득한다.
2. 잔금은 0000년 00월 00일 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단체’는 잔금 납부 후부터 입장권을 판매할 수 있다.
3. ‘재단’은 ‘단체’가 제1항의 계약금과 제2항의 잔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제6조 제4항의 위약금 징수 기준에 따라 ‘단체’가 기납부한 대관료를 위약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5조 (추가사용료)

1. 제3조의 대관료 외 공연진행 중 추가 대관이 발생하는 경우 대관규정 제12조 및 대관세칙 제11조에 따라 ‘재단’은 공연 종료 후 추가 사용료(추가 대관료, 부대설비사용료 등)을 계산하여 ‘단체’에게 별도 청구하며, ‘단체’는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추가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재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납된 사용료가 발생하는 경우 대관세칙 제18조에 따라 ‘단체’가 위탁판매를 의뢰한 입장권 판매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제6조 (대관의 변경과 취소)

1. ‘단체’는 본 계약 체결 후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만일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재단’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제6조 제4항의 위약금 징수 기준에 따라 ‘단체’가 기납부한 대관료를 위약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2. ‘단체’는 승인된 대관내용(공연명, 공연내용, 공연일정, 공연단체 등)을 ‘재단’의 사전 협의없이 변경할 수 없다. 단 ‘단체’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일로부터 최소 30일 전까지 대관 변경신청을 통해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단체’의 귀책사유로 ‘재단’의 유무상의 불이익을 줄 경우 대관대상에서 ‘단체’를 제한할 수 있다.
4. ‘단체’의 사정으로 본 계약 체결 이후 공연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 이를 이유로 본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재단’은 아래와 같이 ‘단체’가 기납부한 사용료의 일정 부분을 위약금으로 징수하고 본 계약을 합의해지 한다. 이 경우 ‘재단’이 승인하지 않은 공연 일정 변경을 이유로 한 본 계약의 해지 요청시에도 본항을 적용한다.

취소시점 (공연일 기준 남은 기간)	위약금
공연일로부터 60일 이상	위약금 없음
공연일로부터 30일 이상 60일 미만	대관료의 20%(계약금) 징수
공연일로부터 30일 미만	대관료의 100% 징수

제7조 (대관준수 사항)

1. ‘단체’는 ‘재단’의 시설 대관 시 대관규정에 명시된 제반 조항 및 본 계약을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2. ‘단체’는 ‘재단’의 시설 대관 시 특별한 설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단체’가 부담한다.
3. 대관 기간 중이라도 ‘단체’가 대관하지 않은 시간에는 ‘단체’의 설치물(무대장치, 소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단체’의 사전 승인 없이 해당 공간을 별도 활용할 수 있다.
4. ‘단체’는 공연 저작물의 내용과 홍보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만일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단체’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재단’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 의무 및 손해배상)

1. ‘단체’는 사용 기간 중 ‘재단’의 시설(무대, 조명, 음향시설과 장비 및 분장실 포함)을 훼손하였을 경우 ‘재단’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2. ‘단체’가 공연을 위하여 설치한 장치 및 기타 시설물(본 계약 제7조 제2항에 따른 설비 포함)은 사용 기간 종료 전 시설 외부로 철거하고, 시설공간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만일 기간 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재단’은 ‘단체’의 공연 관련 시설물을 임의로 철거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단체’가 부담하도록 한다. 이때 시설물이 철거되지 않은 기간 동안 추가 대관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3. ‘단체’는 공연 준비 및 공연, 철수와 관련하여 작업 시 무대예술 관련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등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단 명백한 ‘재단’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에서 ‘재단’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4. ‘재단’ 또는 ‘단체’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양 당사자의 귀책 없는 행정처분 포함)에 의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당사자 모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9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1. ‘재단’은 대관신청서 등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단체’가 제공한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대관업무 처리 및 대관 정보 안내를 위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2. ‘단체’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다. 단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등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받는 경우에는 이를 제3자 등 법령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의 발생 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경우 전속적 관할법원은 ‘재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1조 (계약의 효력)

1. 본 계약의 효력은 ‘재단’과 ‘단체’ 쌍방이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2. 본 계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관규정 및 대관세칙에 따르며, 이 때 대관규정 및 대관세칙은 본 계약의 내용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상기 내용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재단’과 ‘단체’는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재단’	‘단체’
(재)부천아트센터	단체명
경기도 부천시 소향로 165	단체주소
대표 태 승 진 (인)	대표 대표자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5. 01. 16.>

(재)부천아트센터 갤러리 대관계약서

(재)부천아트센터(이하 ‘재단’이라 함)와 OOOO(이하 ‘사용자’라 함)는 시설 대관에 관하여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정의)

1. 본 계약에서 ‘대관’이라 함은 공연, 전시, 연습, 행사 등을 위하여 재단의 시설 및 부대설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대관규정’이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부천아트센터 대관규정을 말한다.

제2조 (대관개요)

1. 단체명 :
2. 전시명(장르) :
3. 대관시설 :
4. 대관기간 :
5. 주최/주관 :

제3조 (대관료산출)

구분	대관 일정		사용료(원)
대관	2023.00.00~2023.00.00 (0일간)	10:00~19:00	
추가			
감면			
대관료 산출	소 계		
	부가세 10%		
	총 계		

제4조 (대관료의 납부)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원)	청구일	납부기한
계약금			
잔 금			
총 대관료			

1. ‘사용자’ 는 0000년 00월 00일 까지 총 대관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함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자격을 취득하며, 잔금은 0000년 00월 00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재단’ 은 ‘사용자’ 가 제1항의 계약금과 제2항의 잔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제6조 제4항의 위약금 징수 기준에 따라 ‘단체’ 가 기납부한 대관료를 위약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5조 (추가사용료)

제3조의 대관료 외 전시진행 중 추가 대관이 발생하는 경우 대관규정 제12조 및 대관세칙 제11조에 따라 ‘재단’ 은 전시 종료 후 추가 사용료(추가 대관료, 부대설비사용료 등)을 계산하여 ‘사용자’ 에게 별도 청구하며, ‘사용자’ 는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추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대관의 변경과 취소)

1. ‘사용자’ 는 본 계약 체결 후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만일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재단’ 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제6조 제4항의 위약금 징수 기준에 따라 ‘사용자’ 가 기납부한 대관료를 위약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2. ‘사용자’ 는 승인된 대관내용(전시명, 전시내용, 전시일정 등)을 ‘재단’ 의 사전 협의없이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 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일로부터 최소 30일 전까지 대관 변경신청을 통해 ‘재단’ 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용자’ 의 귀책사유로 ‘재단’ 의 유무상의 불이익을 준 경우 대관대상에서 ‘사용자’ 를 제한할 수 있다.
4. 본 계약 체결 이후 ‘사용자’ 의 사정으로 전시를 취소 또는 변경하고 이를 이유로 본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재단’ 은 아래와 같이 ‘사용자’ 가 기납부한 사용료의 일정 부분을 위약금으로 징수하고 본 계약을 합의해지 한다. 이 경우 ‘재단’ 이 승인하지 않은 전시 일정 변경을 이유로 한 본 계약의 해지 요청시에도 본항을 적용한다.

취소시점 (대관 시작일 기준 남은 기간)	위약금
대관 시작일로부터 60일 이상	위약금 없음
대관 시작일로부터 30일 이상 60일 미만	대관료의 20%(계약금) 징수
대관 시작일로부터 30일 미만	대관료의 100% 징수

제7조 (대관준수 사항)

1. ‘사용자’ 는 ‘재단’ 의 시설 대관 시 대관규정에 명시된 제반 조항 및 본 계약을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2. ‘사용자’ 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작품을 운송, 설치 및 관리한다.
3. ‘사용자’ 는 전시공간의 구조 및 시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시를 하는 경우 ‘재단’ 에게 사전에 알리고 협의하여야 한다.
4. ‘재단’ 은 대관기간 중 작품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사용자’ 에게 알린다.
5. ‘사용자’ 는 작품 활동 및 작품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만일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 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재단’ 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 의무 및 손해배상)

1.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재단’의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 ‘재단’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사용기간 말일까지 작품 및 전시를 위하여 설치한 장치 등을 철거하고, 전시공간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만일 기간 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재단’은 ‘사용자’의 전시 관련 시설물을 임의로 철거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이때 시설물이 철거되지 않은 기간 동안 추가 대관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3. ‘재단’ 또는 ‘사용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계약을 위반한 측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양 당사자의 귀책 없는 행정처분 포함)에 의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당사자 모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9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1. ‘재단’은 대관신청서 등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대관업무 처리 및 대관 정보 안내를 위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2. ‘사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다. 단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등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받는 경우에는 이를 제3자 등 법령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의 발생 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경우 전속적 관할법원은 ‘재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1조 (계약의 효력)

1. 본 계약의 효력은 ‘재단’과 ‘사용자’ 쌍방이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2. 본 계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관규정 및 대관세칙에 따르며, 이 때 대관규정 및 대관세칙은 본 계약의 내용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상기 내용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재단’과 ‘사용자’는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재단’	‘단체’
(재)부천아트센터	단체명
경기도 부천시 소향로 165	단체주소
대표 태 승 진 (인)	대표 대표자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재)부천아트센터 사용료 감면신청서

<table>
<tr><td>단체명</td><td colspan="2"></td><td>연락처</td><td></td></tr>
<tr><td>대표자명</td><td colspan="2"></td><td>사업자등록번호</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4"></td></tr>
<tr><td>공연명</td><td colspan="4"></td></tr>
<tr><td>준비 기간</td><td colspan="4">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td></tr>
<tr><td>공연 기간</td><td colspan="4">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총 회)</td></tr>
<tr><td rowspan="2">사용시설 및
부대설비</td><td>기본시설</td><td colspan="3"></td></tr>
<tr><td>부대설비</td><td colspan="3"></td></tr>
<tr><td>감면신청
사유</td><td colspan="4"></td></tr>
</table>

「(재)부천아트센터 대관규정」 제13조 및 「(재)부천아트센터 대관세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재)부천아트센터 귀하